

[달.콤(dal.komm)]

정 보 공 개 서

[(주)다날에프엔비]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04. 29.

[(주)다날에프엔비]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 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황새울로 359번길 7, 3층(한국정보공학 본사사옥)

[대표전화번호] 1661-1399

[대표팩스번호] 070-5096-0101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경영본부 1661-1399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영 업 표 지	주 소			
(주)다날 에프엔비	달.콤(dal.komm)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9번길 7, 3층 (한국정보공학 본사사옥)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3.01.31	2013.02.01	심순열	1661-1399	070-5096-0101
	법인등록번호	131111-0333341	사업자등록번호		144-81-09353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관 계	이름/상 호	영 업 표 지	주 소		
대표이사	심순열 (주)다날에프엔비	달.콤 (dal.komm)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59번길 7, 3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심순열	1661-1399	070-5096-0101
사용인 (임원)	박성찬 (주)다날에프엔비	달.콤 (dal.komm)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59번길 7, 3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심순열	1661-1399	070-5096-0101
사용인 (임원)	최병우 (주)다날에프엔비	달.콤 (dal.komm)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59번길 7, 3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심순열	1661-1399	070-5096-0101
사용인 (감사)	백현숙 (주)다날에프엔비	달.콤 (dal.komm)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59번길 7, 3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심순열	1661-1399	070-5096-0101
계열회사	(주)다날 엔터테인먼트	달콤파티 노래연습장 (자진취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35번길 10, 2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임유엽	031-697-1005	031-697-1464
	법인등록번호	131111-0300944	사업자등록번호		129-86-704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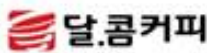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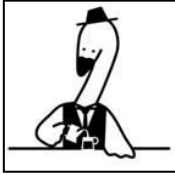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	-	-	-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	-	-	-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	-	-	-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	-	-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달.콤(dal.komm)]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달.콤(dal.komm)	다날의 "dal" 과 come in의 뜻을 담고 있는 독어 "komm"의 합성어
상 호	달.콤(dal.komm)커피 OO점	해당 지역명 표기
상 표		상표 등록번호 : 45-0052925, 40-1134425
		상표 등록번호 : 45-0052927 40-1134428
		상표 등록번호 : 40-1319426
		상표 등록번호 : 40-1319427

	Dal.Komm COFFEE & COFFEE BAR	상표 출원번호 : 40-2023-0133649
		상표 등록번호 : 40-2021-0252111
		상표 등록번호 : 40-2021-0252115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16,987,535	20,903,315	-3,915,780	11,736,055	-5,990,159	5,116,289
2022년	11,553,676	20,446,626	-8,892,950	12,841,403	-3,081,681	-5,105,585
2023년	5,828,325	18,116,567	-12,288,242	11,609,891	-2,508,736	-3,358,801

위 재무상황의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심순열	대표이사	2023. 09 ~ 현재	대표이사	사업 총괄
	박성찬	이사	2020. 10. ~ 현재	등기 이사	경영 전반
	최병우	이사	2016. 03. ~ 현재	등기 이사	경영 전반
	백현숙	감사	2014. 06. ~ 현재	감사	감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4	0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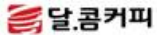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다날 엔터테인먼트	가맹사업 경영	2017. 4. ~ 2019. 9	달콤파티노래연습장 (등록번호:20170531) 라는 영업표지의 노래연습장업 경영 (자진취소)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상표권)	제품사용 및 대가수수/ 광고·홍보	2013.11.04. 출원 2014.12.26. 등록	출원 2013-0006423	(주)다날 에프엔비	2024.12.26.			
			등록 45-0052925					
		2014.08.19. 출원 2015.10.07. 등록	출원 2014-0055648		2025.10.07.			
			등록 40-1134425					
 (상표권)		2013.11.04. 출원 2014.12.26. 등록	출원 2013-0006425		(주)다날 에프엔비	2024.12.26.		
			등록 45-0052927					
		2014.08.19. 출원 2015.10.07. 등록	출원 2014-0055683			2025.10.07.		
			등록 40-1134428					
dal.komm COFFEE (상표권)		2016.11.21. 출원 2018.01.08. 등록	출원 2016-0101421			(주)다날 에프엔비	2028.01.08	
			등록 40-1319426					
 (상표권)		2016.11.21. 출원 2018.01.08. 등록	출원 2016-0101435				(주)다날 에프엔비	2028.01.08
			등록 40-1319427					
 (상표권)	2021.12.10. 출원 2022.10.04. 등록	출원 40-2021-0252104	(주)다날 에프엔비	2032.10.04.				
		등록 40-1916961						
 (상표권)	2021.12.10 출원 2023.04.24 등록	출원 40-2021-0252111		(주)다날 에프엔비				2033.07.11
		등록 40-2050829-0000						
 (상표권)	2021.12.10 출원 2023.04.24 등록	출원 40-2021-0252115			(주)다날 에프엔비			2033.07.11
		등록: 40-2050834-0000						

※ 사용을 허용하는 상표의 종류 및 범위는 매장 별 가맹계약에서 정한 예에 따릅니다.

※ 출원 신청만 된 상표의 경우에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달.콤(dal.komm)] 가맹사업 현황

1. [달.콤(dal.komm)]을 시작한 날: 2012년 5월 7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11년 4월 6일)

2. [달.콤(dal.komm)]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다날엔터 테인먼트	달.콤 (dal.komm)	류공선, 최병우	2012.1.1. ~ 2013.1.3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16(수내동,휴맥스빌리지7층)
(주)달콤	달.콤 (dal.komm)	최병우, 강택규	2013.2.1. ~ 2014.6.3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서현동,분당퍼스트타워9층)
(주)달콤	달.콤 (dal.komm)	최병우	2014.7.1. ~ 2016.11.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서현동,분당퍼스트타워9층)
(주)달콤	달.콤 (dal.komm)	지성원	2016.11.7. ~ 2019.11.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서현동,분당퍼스트타워9층)
(주)달콤	달.콤 (dal.komm)	지성원, 정창화	2019.11.4. ~ 2020.1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서현동,분당퍼스트타워9층)
(주)다날에프엔비	달.콤 (dal.komm)	박경철	2020. 10. 5. ~ 2023.9.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9번길 7, 3층(한국정보공학 본사)
(주)다날에프엔비	달.콤 (dal.komm)	심순열	2023.9.11 ~ 현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9번길 7, 3층(한국정보공학 본사)

3. [달.콤(dal.komm)] 업종

영업표지	업종	
달.콤(dal.komm)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커피	커피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달.콤(dal.komm)]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연도	2021.12.31			2022. 12. 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38	114	24	115	92	23	93	73	20
서울	28	14	14	24	10	14	22	10	12
부산	2	2	-	2	2		1	1	
대구	6	6	-	4	4		4	4	
인천	4	4	-	6	6		4	4	
광주	8	8	-	5	5		4	4	
대전	1	1	-	1	1		1	1	
울산	1	1	-	0	-				
세종	1	1	-	0	-				
경기	37	28	9	30	22	8	23	16	7
강원	8	8	-	8	8		7	7	
충북	4	4	-	3	3		4	4	
충남	2	2	-	1	1		2	2	
전북	6	6	-	6	6		2	2	
전남	9	9	-	6	6		3	3	
경북	14	14	-	9	9		9	9	
경남	4	3	1	7	6	1	6	5	1
제주	3	3	-	3	3		1	1	

5. 바로 전 3년간 [달.콤(dal.komm)]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126	3	0	15	3	114
2022	114	4	0	26	1	92
2023	92	10	0	29	3	73

6. [달.콤(dal.komm)]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달.콤(dal.komm)]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다날엔터테인먼트	달콤파티노래 연습장	20170531	노래연습장업	0/0	0/0	0/0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달.콤(dal.komm)] 가맹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제외)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73	188,001	5,991,887	5,817,837	641,631	539,715	15,232	
서울	10	406,908	17,117	2,401,827	400,305	11,326	1,451	
부산	1							해당없음
대구	4	252,455	4,449	404,843	13,495	81,413	1,154	
인천	4	97,345	6,830	349,364	9,982	2,263	174	
광주	4	232,726	5,428	424,793	15,237	78,070	1,148	
대전	1							해당없음
울산								해당없음
세종								해당없음
경기	16	151,363	4,024	582,448	16,328	6,352	583	
강원	7	126,774	4,796	354,537	12,642	49,093	1,314	
충북	4	144,919	5,367	202,065	50,516	73,014	2,282	
충남	2							해당없음
전북	2	143,375	4,853	217,738	7,591	69,013	4,355	

전남	3	148,879	3,821	157,898	34,332	132,686	2,094	
경북	9	111,705	7,158	232,831	77,610	1,033	34	
경남	5	150,625	2,428	489,492	3,594	35,453	645	
제주	1							해당없음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위 자료는 POS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재한 것으로, 가맹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POS상의 매출액 외의 추가 매출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기재한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73개** 매장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8. [달.콤(dal.komm)]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달.콤(dal.komm)]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①	평균 영업기간 ^②
2023	73	1860

①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수를 기준

② 최초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의 기간 기준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해당 없습니다.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달.콤(dal.komm)]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구분	수단	기간	지출비용(단위:천원, 부가세 제외)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523,925	 (비공개)		
광고		(비공개)		(비공개)		-
		(비공개)		(비공개)		-
		(비공개)		(비공개)		-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
		(비공개)		(비공개)		-
		(비공개)		(비공개)		-
판촉		(비공개)		(비공개)		-
		(비공개)		(비공개)		-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
		(비공개)		(비공개)		-

		(비공개)		(비공개)		
--	---	-------	---	-------	--	--

※ 위 표 가맹본부의 광고·판촉 지출비용은 가맹사업(달콤(dal.komm)) 관련하여 지출된 내역을 기재한 것이며, 가맹사업 외 자동판매기사업 관련 광고·판촉 지출비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리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우리은행	분당중앙업무팀 (이준범 과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0-2, 2층	031-704-1541(313)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우리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우리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다날에프엔비을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달.콤(dal.komm)]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1,000]				
가입비	2,200	계약 체결과 동시	영업 개시 이전 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비용	반환 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개점 및 경영지원비	5,500				
교육비	3,300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10,000]			

(현금)보증금	10,000	계약 체결과 동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금의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서울보증보험의 계약이행보증 증권으로 대체 가능
---------	--------	--------------	--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합 계	21,000
가 입 비	2,200
개점 및 경영지원비	5,500
교 육 비	3,300
(현금)보 증 금	10,000

당사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경우 귀하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별도 가맹금 예치를 하지 않습니다.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132㎡(40평) 기준)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총계		167,000	4,175		
인테리어	시공비	협력업체 (미지정)	72,000	계약 체결 시 개별 계약	소요비용 공제 후 반환
	간판/사인	가맹본부	20,000		
	주방/설비	가맹본부	50,000		
	가구	가맹본부	25,000		

※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당사의 설계 및 검수 대가로 매장크기에 따라 220천원(VAT포함)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3일 전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 i)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ii) 상기 인테리어 비용은 선택사항에 대한 추가 및 가구, 의탁자, 간판물, 냉난방기, 철거공사, 전기증설, 소방공사, 외부테라스, 각종 인허가사항, 외부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iii) 자세한 비용은 계약 체결 시, 매장 실측 후 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당사 점포개발팀 (전화:1661-1399)	1) 가맹점사업자가 점포 위치를 선정하여 오는 경우 : 기존 가맹점에 대한 영업지역권 침해여부 등을 고려한 후, 신규 가맹점의 입지를 허가함. 만약 조건에 맞지 않으면 입지 변경 권유 2) 가맹점사업자가 점포 입지 선정을 요청할 경우 : 담당자 배정→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지역 파악→ 당해 지역내 임차등 가능한 점포 물색하여 가맹희망자에게 통지→가맹희망자와 담당자의 현장 확인→가맹희망자의 최종 결정 3) 가맹본부가 점포 입지를 선정해 놓은 경우 : 가맹희망자에게 점포입지 안내→가맹희망자와 담당자의 현장 확인→가맹희망자의 최종결정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아닐 것 /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내역 및 공급방법, 공급업체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는 가맹금은 한 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 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여부 및 반환조건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월 매출액의 3%	익월 10일	후불로 반환 안됨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방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 일부 부담	개별 청구	광고 활동 이후 반환되지 않음	
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방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 일부 부담	개별 청구	판촉 활동 이후 반환되지 않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협의	개별 청구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광고모델 변경 등에 따른 제작물변경 비용	가맹본부	협의 해당 제작물의 교체 또는 폐기비용은 가맹사업자가 부담	개별 청구		모델계약기간 종료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모델 교체 후 30일 이내 제작물 교체 또는 폐기
영상서비스 (사이니지)	가맹본부	33,000원/월	익월 10일		
매장음악서비스	가맹본부	9,900원/월	익월 10일		가맹점사업자 선택사항
수시교육비	가맹본부	44만원/2회	비용통지서 도달 후 7일 이내	교육실행 이후 반환되지 않음	교육 필요시 지급 (숙박비, 교통비 별도)
자연이자	가맹본부	연 6%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금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급기한(익월 10일)을 경과했을 시 부담
POS사용료	협력업체	월 33,000원	개별 계약 체결	개별 계약에 따름	POS업체 대여장비 (점주 직접 지불)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실제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수시	문의: 사업운영실 (1661-1399)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수시	문의: 사업운영실 (1661-1399)
------	------------------------------	----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와 가맹 계약 체결 의사가 없을 경우, 기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 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 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는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 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

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당사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한 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가맹점사업자는 정보공개서 상의 가입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달.콤(dal.komm)]**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사로부터 부여 받았던 가맹점운영권이 만료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i) 당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달.콤(dal.komm)]** 가맹 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ii)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달.콤(dal.komm)]**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 POS의 경우, 특수상권 및 해당 포스를 사용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협의 하에 타 POS기기 사용 가능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당사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은 [별첨2]와 같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달.콤(dal.komm)]**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원)	비고
(주)다날	계열사		(비공개)	
계			 (비공개)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달.콤(dal.komm)]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공급가액)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2) 당사가 [달.콤(dal.komm)]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 ·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12 기준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시그니처	허니큐브	왼쪽에 기재된 상품 이외 승인 받지 않은 상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 구두 경고, 서면 시정 요구 2회 위반 : 1회 서면 시정 요 구 후 가맹점운영권 제한	계약 해지시에는 가 맹사업법의 해지 절차 를 준용 함.
	흑당 허니큐브			
	베리큐브			
	망고큐브			

	큐브		또는 2회 이상 서면 시정 요구 후 계약 해지	
	핫초코큐브			
	허니몽			
	자몽얼그레이			
커피	아메리카노_다크			
	아메리카노_마일드			
	에스프레소			
	카페라떼			
	카푸치노			
	바닐라라떼			
	더블모카라떼			
	카라멜마끼아또			
	그린티카페라떼			
	콜드브루			
	콜드브루라떼			
	콜드브루 아인슈페너			
	흑당아인슈페너			
에이드/주스	레몬에이드			
	자몽에이드			
	청포도에이드			
	칼라만시에이드			
	한라봉에이드			
	자몽주스			
	복숭아 아이스티			
	키위주스			
	토마토주스			
	비타민 클린 주스			
밀크 베버리지	그린티라떼			
	더블초콜릿라떼			
	골드고구마라떼			
	스트로베리라떼			
	얼그레이 밀크티라떼			
블렌디드	바닐라블렌디드			
	초콜릿블렌디드			
	그린티블렌디드			
	카라멜블렌디드			
	망고블렌디드			

	청포도블렌디드			
	요거트블렌디드			
차	얼그레이			
	캐모마일			
	페퍼민트			
	유자차			
	유자엘더베리티			
	레몬진저캐모마일티			
	대추쌍화차			
	배도라지차			
베이커리	허니버터브레드			
	슈보로			
	크로크무슈			
	바바리안 츠러스/초코슈스틱			
	쌀롱/녹차쌀롱/초코쌀롱			
	마카롱(바닐라/초코/딸기/카라멜)			
	샌드위치(미트볼/바질치즈)			
	피자(고르곤졸라, 페퍼로니)			
	스콘(얼그레이레몬, 생크림, 크렌베리아몬드)			
	맘모스(사과/딸기)			
	감자빵/고구마빵			
	베이글			

- 샷 추가 또는 휘핑크림 추가 시, 500원 추가
- 라지 사이즈 변경 시, 500원 추가
- 빙수 팔 추가 시, 1,000원 추가
- 바닐라 / 헤이즐넛 시럽추가 500원 추가
- 가맹본부에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가맹사업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에 대하여 변경(신제품 출시 및 시한 제품 판매 중단), 가격 변경(인상 또는 인하)을 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고객 판매용도 외에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려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메뉴제공)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2023. 12 기준

상품/용역명		권장가격		가격통보방법	비고
		HOT	ICE		
시그니처	허니큐브	해당없음	6,000	홈페이지, 홍보인쇄물, POP, 디지털 메뉴보드 등	
	흑당 허니큐브	해당없음	6,000		
	베리큐브	해당없음	6,000		
	망고큐브	해당없음	6,000		
	큐브	해당없음	6,000		
	핫초코큐브	해당없음	6,000		
	허니몽	6,800	6,800		
	자몽얼그레이	6,300	6,300		
커피	아메리카노_다크	4,500	4,500		
	아메리카노_마일드	4,500	4,500		
	에스프레소	3,700	3,700		
	카페라떼	5,200	5,200		
	카푸치노	5,200	5,200		
	바닐라라떼	5,700	5,700		
	더블모카라떼	5,800	6,300		
	카라멜마끼아또	5,900	5,950		
	콜드브루		5,500		
	콜드브루라떼		6,000		
	콜드브루 아인슈페너		6,500		
	흑당아인슈페너	6,300	6,300		
에이드,주스	레몬에이드		5,300		
	자몽에이드		5,300		
	청포도에이드		5,300		
	칼라만시에이드		5,300		
	한라봉에이드		6,000		
	자몽주스		5,300		
	키위주스		6,000		
	토마토주스		6,000		
	복숭아 아이스티		4,800		
	비타민 클린 주스		6,000		
밀크 베버리지	그린티라떼	5,500	5,500		
	더블 초콜릿 라떼	5,500	5,500		

	골드 고구마라떼	5,800	5,800
	얼그레이 밀크티라떼	5,300	5,300
	스트로베리 라떼	해당없음	5,500
블렌디드	바닐라블렌디드		6,300
	초콜릿블렌디드		6,300
	그린티블렌디드		6,300
	카라멜블렌디드		5,800
	망고블렌디드		6,300
	청포도블렌디드		5,500
	요거트 블렌디드		6,300
차	얼그레이	4,500	4,500
	캐모마일	4,500	4,500
	페퍼민트	4,500	4,500
	하동녹차	4,500	4,500
	유자차	4,800	4,800
	대추쌍화차	5,500	5,500
	배도라지차	5,500	5,500
	유자엘더베리	5,500	5,500
	레몬진저 캐모마일	5,500	5,500
베이커리	버터허니브레드	5,500	
	슈보로	2,700	
	크로크무슈	4,300	
	바바리안 츠러스/초코슈스틱	2,500	
	쌀롤/녹차쌀롤/초코쌀롤	3,500	
	마카롱(바닐라/초코/딸기/카라멜)	2,500	
	베이글(어니언/플레인)	2,600	
	플레인 리코타치즈베이글	3,800	
	맘모스(사과/딸기)	4,500	
	도넛(바닐라초코볼, 라즈베리블라썸, 벨지안초코)	2,800	
	피자(고르곤줄라, 페퍼로니)	6,500	
	스콘(얼그레이레몬, 생크림, 크렌베리아몬드)	3,800	
	단호박 크림치즈샌드위치	5,500	
	더블햄 모자렐라 샌드위치	5,800	
	미트볼 칠리 치즈 샌드위치	5,300	
	바질치즈 치아바타	4,800	
	에그포테이토 모닝롤	4,300	
	감자빵/고구마빵	3,300	
	마늘빵	2,500	
	에그타르트	2,100	

다크코코넛레밍턴	1,900		
브라우니	2,500		
커피번	3,500		
크로와상	2,500		
마카롱도넛(딸기/초코)	1,900		
얼그레이 생크림 케이크	5,200		
오레오우유 케이크	5,300		
초콜릿 케이크	5,800		
당근 케이크	6,300		
유자편킨 케이크	5,800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 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여부	
	가맹본부	계열회사
커피 및 커피외의 음료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달.콤커피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	------

계약매장에서 보행로거리 (정상적인 횡단보도 및 인도)로 300m를 원칙	가맹점 사업자와 합의에 의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	---

단, 독립상권으로 특수상권에 입점하는 경우(백화점, 대형마트, 지하상가, 공항, 호텔, 대형병원, 관공서, 대학교, 시장, 대형오피스건물, 대형쇼핑몰, 역사 내 등)는 예외로 합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달.콤(dal.komm)’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달.콤(dal.komm)]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Smartstore.naver.com/dalkommcoffee	-발리 블루문 G1 드립백 -싱글오리진 티백커피 -자몽칩 블랙티 -시그니처 블랙 포션 커피 -사바라가무와 홍차 포션티 -포션 반반 세트 -게이샤 포션커피 -시그니처 블렌드 캡슐커피 -다크 블렌드 캡슐커피 -브라질 모지아나 원두200g -과테말라 안티구아 원두200g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원두200g -시그니처 머그컵 -시그니처 텀블러 -드리밍 고블렛잔 -R-PET BAG -고블렛잔 -어텀 마그넷 -DIY 텀블러	비대면 거래
온라인	쿠팡	www.coupang.com	-시그니처 블랙 포션 커피 -사바라가무와 홍차 포션티 -게이샤 포션커피 -10주년 키트 -시그니처 텀블러	비대면 거래

			-브라질 모지아나 원두200g -과테말라 안티구아 원두200g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원두200g	
--	--	--	---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①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②
2023	39.87%	57.59%	2.49%	0.05%

① 매출액 비중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작성하며,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해당 채널의 판매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

② 기타 온라인 매출액이란 가맹본부가 자사 온라인몰을 제외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하여 가맹본부에게 발생한 매출액과 온라인 채널에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가맹본부에게 발생한 매출 액을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①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②
2023	0%	24%

① 오프라인 전용상품이란 가맹점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가맹점 전용상품 수/해당 영업표지의 상품 수

② 온라인 전용상품이란 가맹본부가 온라인에서만 판매하거나 가맹본부가 온라인 플랫폼에만 공급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온라인 전용상품 수/해당 영업표지의 상품 수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달.콤(dal.komm)]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3년입니다, 가맹사업자와 본사 간에 특별한 해약 사유가 없는 경우 1년씩 자동연장 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엿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엿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엿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엿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갱신시 계약기간 3년)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6조 1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면허, 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법, 식자재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원·부재료, 교육비, 가맹비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29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37조 1항
○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영업양도, 승계, 담보제공, 사업자위치변경을 한 경우	
○ 영업상 비밀공개의무 위반이나 경업금지 위반을 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 제5항에 의한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 · 개량 · 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원 · 부재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않거나 품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공방법, 종류(메뉴 등), 판매방법, 서비스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운영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운영매뉴얼이나 세부운영규칙을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9조 2항 37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개정 등 기타 계약 수정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서면 통지 후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로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가맹영업팀 (1661-1399)

i) 양수인은 잔여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 이수 및 정보공개서상의 양수인의 부담비용(교육비, 보증금 등)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ii)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가맹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 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대리행사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대리 행사 절차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업무위탁	불가능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 및 제3자로 하여금 [달.콤(dal.komm)]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 영업비밀 보호(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영업비밀 보호'란 당사의 조리법, 노하우 등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제3자나 경쟁업체에 누설하지 아니하고 비밀로써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일반인을 상대로 커피 및 각종 음료와 디저트를 함께 판매하는 커피전문 업체 및 커피전문점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달.콤(dal.komm)]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07:00 ~ 24:00 (점포별, 상권별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	연중무휴	문의: 사업운영실 (1661-139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직접 근무 권장(필수 아님)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 · 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 · 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점포 관리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본사 가맹영업팀 (슈퍼바이저)
	친절도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품질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회계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회계자료 요청 → 회계자료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당사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달.콤(dal.komm)]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브랜드 및 상품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PPL, 옥외광고, 전국행사
	브랜드 및	광고비의	광고비 25% 중		

	상품광고 + 가맹점모집 광고	75%	가맹점 총수비용에 따라 부담		박람회, 사업설명회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활동	통상적인 전체 행사	본사진행 홍보시안 등의 기획 및 디자인시안비용은 본사 부담(일부 제작물 지원)	가맹점의 할인, 경품, 전단, 쿠폰 등의 홍보물의 비용은 가맹점 부담	기획 및 디자인 → 시안 검토 및 제작 → 행사 진행	
연예인 개별행사	매장행사 (팬사인회, 베란다라이브 등)	행사비의 70% 내외	행사비의 30% 내외	셀럽 행사 공지 → 가맹점 참여여부 결정 → 행사 진행	연예인 섭외비에 따라 다름
기타 개별 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기획 및 디자인 → 시안 검토 및 제작 → 행사 진행	
할인카드, 선불카드, 멤버십, 쿠폰, 제휴서비스, 전자상품권 등		관련마케팅 및 홍보물비용 전액부담, 일부 수수료 부담, 일부 서비스에 대한 원두보상	할인카드, 선불카드 및 제휴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부담, 일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원가부담	관련 내용 계획 공고 → 가맹점 참여여부 결정 → 서비스 시행	서비스 동의 종료 시 까지

※ ‘브랜드 및 상품광고’의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본부 전액 부담시 가맹점부담액을 제시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음.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부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부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 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팸플릿, 카탈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그 직원에 의한 영업비밀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관리감독상의 의무는 가맹계약의 성립시점부터 종료 후 3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속됩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가맹계약서 제41조에 따라 위약벌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1조 (손해배상)

① ‘을’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갑’에게 그에 따른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유	위약벌
가맹점사업자가 제38조 1항을 위반하여 영업표지 등을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300,000원/일
가맹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된 경우. 단,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의 평균매출액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제외. ※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위반, 가맹본부가 제시한 경영방침 미준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평균 매출액이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한 경우는 제외 ※ 월평균 로열티란, 가맹계약 해지일 이전 12개월(영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영업 개시일부터 계약 해지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로열티	[월평균 로열티 + (월평균 물품대금 x 35%)] x 잔여계약개월수

의 월 평균가를 말하고, 월평균 상품대금이란 같은 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한 상품의 구매대금의 월 평균가를 말하고, 잔여 개월 수란 가맹계약 해 지일부터 당초의 가맹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말한다.

가맹점 사업자가 설비·기기·장비를 가맹본부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무상대여 등 포함)받고 가맹사업자의 일방적 가맹계약 중도해지 또는 가맹사업자의 귀책으로 가맹계약이 해지된 경우

설비·기기·장비의 무상지원금
(지원당시의 가액)

②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배상책임을 진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참조
사업 설명 · 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 ~ 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 ~ 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우리은행에 가맹금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 ~ 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 ~ 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 ~ 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 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 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 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 환경개선을 한 경 우에는 점포환경 개선이 끝난 날부 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 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 약서 등 공사비용 을 증빙할 수 있 는 서류 첨부) → 3 차에 걸쳐 가맹본 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 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 차 : 1차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 내, 총 부담액의 40%)		
--	--	--	---	--	--

※ 단, '지급절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지급함.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우수매장	12개월 이상 영업 중인 가맹점 대상 선정	본사운영방침 성실 이행 매장	연간 1회	소모비용 또는 물품 전액 당사 부담	
우수사원	6개월 이상 근속중인 가맹직원 대상 선정	가맹점 6개월 이상근속직원 중 추천 및 심사를 통해 선정	연간 2회		
판매활성화 지원	고객 대상 판매촉진 이벤트 지원	없음 (전 가맹점 해당)	수시		
판촉물제작 지원	각종 판촉행사 시 소모되는 판촉물 지원	없음 (전 가맹점 해당)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 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 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 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본사 사업운영실 (1661-1399)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 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 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 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 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 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본사 사업운영실 (1661-1399)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달.콤(dal.komm)]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상시적인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과 경영사정 등을 감안한 개별적인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달.콤(dal.komm)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메뉴제조 실습, 서비스 교육, 매장관리 교육, POS교육 등	실습교육 (교육장or현장) 신규 가맹계약사업자 직원 및 점장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개점 전까지	필수 교육
보수 교육	신메뉴 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실습교육	통지 후 7일내	필수 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달.콤(dal.komm)]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신규 교육	이론 교육	7일	3,300	최초 계약 시 이수 (숙박비, 교통비 별도)
	실습 교육	3일	-	
수시 교육		3일	440	3회 이상 고객불만 접수 시 또는 가맹점주 요청 시 이수 (숙박비, 교통비 별도)

위의 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교육이 진행될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 및 가맹점 직원 채용 예정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여받는 등 외에도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해지(제37조)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계약 갱신 거절(제36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업 거부/보류(제14조)

IX. 가맹본부의 직영점^①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성수트러스트점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56-505 1층 내 로비
2	경기	분당서현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1번길 36
3	경기	서현영풍문고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 퍼스트타워 지하 1층
4	서울	목동방송회관점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1층
5	서울	천호대로점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053 (강동 컴홈스테이 1차) B 101
6	서울	경희대국제캠퍼스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외국어대학
7	서울	가락시장역점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09, 세동포토 1층
8	서울	경희의료원점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의료원 부속동 지상 2 층
9	경기	고양터미널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42 지하 1층
10	경상	신세계 김해점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232, 신세계백화점 김해점 2층
11	경기	달콤커피 에버랜드 판다월드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
12	경기	달콤커피 에버랜드 가든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
13	서울	달콤커피 영등포로터리점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900
14	서울	달콤커피 경희의료원본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본관1층
15	서울	달콤커피 경희의료원 암병동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본관1층
16	서울	달콤커피 교대역점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0 1층
17	경기	달콤커피 광주쌍령점	경기 광주시 경충대로 1444
18	경기	달콤커피 별내미리내점	경기도 구리시 금강로49 (갈매동149-9)
19	서울	달콤커피 롯데아쿠아리움 디오션점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300, 엔터테이먼트동 지하1층
20	서울	달콤커피 아쿠아리움 씨테이블점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월드몰 B1 아쿠아리움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②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3년 9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③
284,945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① 직전 사업연도 말에 영업 중인 모든 직영점을 대상으로 합니다.
- ② 직전 사업연도 말에 영업 중인 모든 직영점의 최초 영업개시일로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의 영업일수를 모두 더하여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직영점 수로 나눈 기간을 의미하며, 이를 연 및 개월 단위로 환산하여 기재합니다.
- ③ 연간 평균 매출액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였는지 가맹본부가 가지고 있는 내부 자료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연간 평균 매출액은 보다 합리적인 산정을 위하여 직영점이 실제 영업한 개월수가 6개월 이상이면 1년치로 환산하여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자료에 포함시키고, 직영점의 영업 개월수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직영점의 매출액은 매출액 산정자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출점전략실(1661-1399)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 ~ 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http://www.dalkomm.com>] 또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2023년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022 년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
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2021년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
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 · 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
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